
『2024년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중대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본원)

2024. 02.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목 차

I. 개요	1
1. 목 적	
2. 관련 근거	
3. 용어의 정의	
4. 적용 범위	
5. 책임과 역할	
II. 산업재해 예방	4
1. 예방 활동	
2. 위험 상황 발생	
III. 산업재해 대응 체계	5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2. 사고 발생 대응	
3. 사고 발생 후속 조치	
4. 유형별 응급 조치 방법	
IV. 관련 양식	12
1. 산업재해 조사표	
2. 사고 발생 보고서	
3. 재해자·목격자 진술서	
4. 사고(재해) 재발방지 대책	

I. 개요

1 목 적

- 한국콘텐츠진흥원 본원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 시민)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긴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처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2 관련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3 용어의 정의

-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건물 및 사업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적용 범위

- 우리 원(본원)의 근로자, 수급업체 근로자 및 건물, 대관시설 등을 사용하는 고객들에 대해 적용

5 책임과 역할

- 경영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 안전보건 비상사태 대비 조직 관리 책임
 -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예산 등을 지원
 - 산업재해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산업재해가 발생한 부서에서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 관리감독자(부서장)

- 안전·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처리에 대한 총괄 지휘
- 산업재해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 사고에 대한 내용,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
(사고발생보고서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이행

□ 안전관리자(안전보건전담부서 안전관리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대응 지침 마련 및 안내
- 관리감독자로부터 보고받은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전사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수평전개와 함께 성실한 이행 지원

□ 안전보건담당관(건물담당자)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이행
-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행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개선 이행
-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이행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이행
- 사업장 시설물 점검·유지 및 지원
-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상주직원, 수급업체 및 방문자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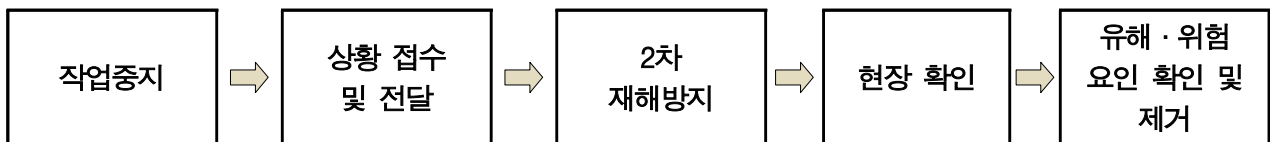
- 작업 장소 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중지권 행사
-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재해 예방에 대한 모든 법률과 규칙 준수 및 의무 수행할 책임

II. 산업재해 예방

1 예방 활동

- 지속적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작업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개인 안전장구 지급,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유소견자 관리

2 위험 상황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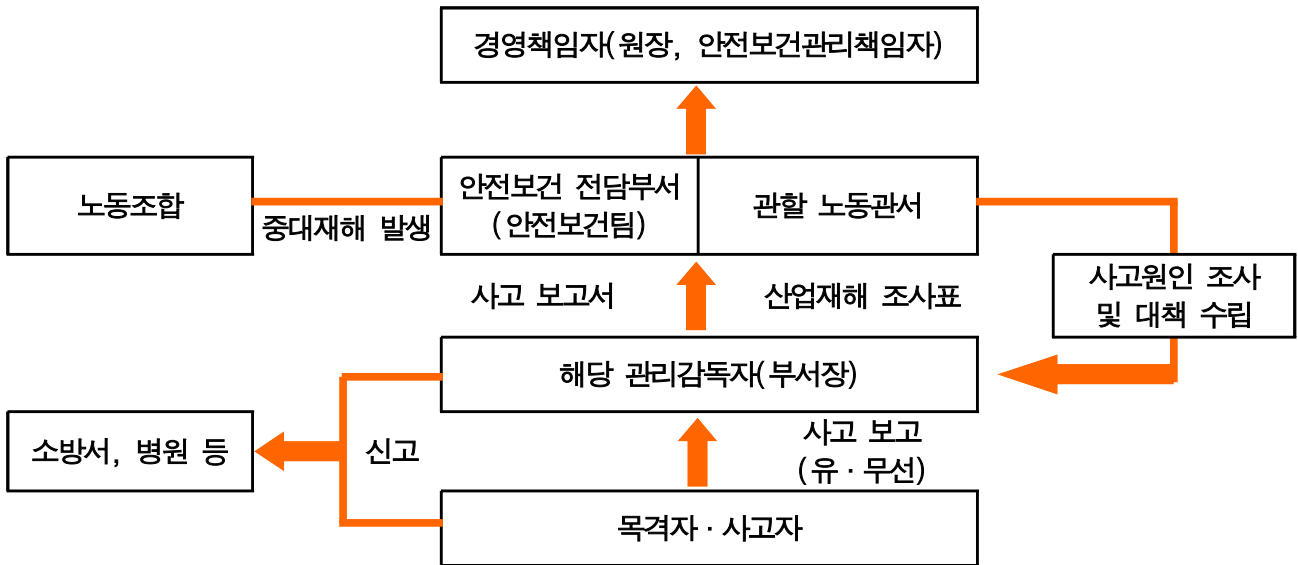


구분	내용	수행자
작업 중지	• 최초발견자는 위험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한다.	최초발견자
상황 접수 및 전달	• 위험상황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최초발견자
2차 재해방지	• 중대재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근로자, 수급업체, 시민 등 대피 조치를 하고 현장 출입을 통제한다. • 2차 재해 방지 조치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을 통제한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
현장 확인	• 현장을 확인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결정한다.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을 재개한다. •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팀으로 보고하고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업무 재개 전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가 적합한 지 검토하고 위험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 후 업무를 재개한다.	안전보건팀 관리감독자

Ⅲ. 산업재해 대응 체계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사고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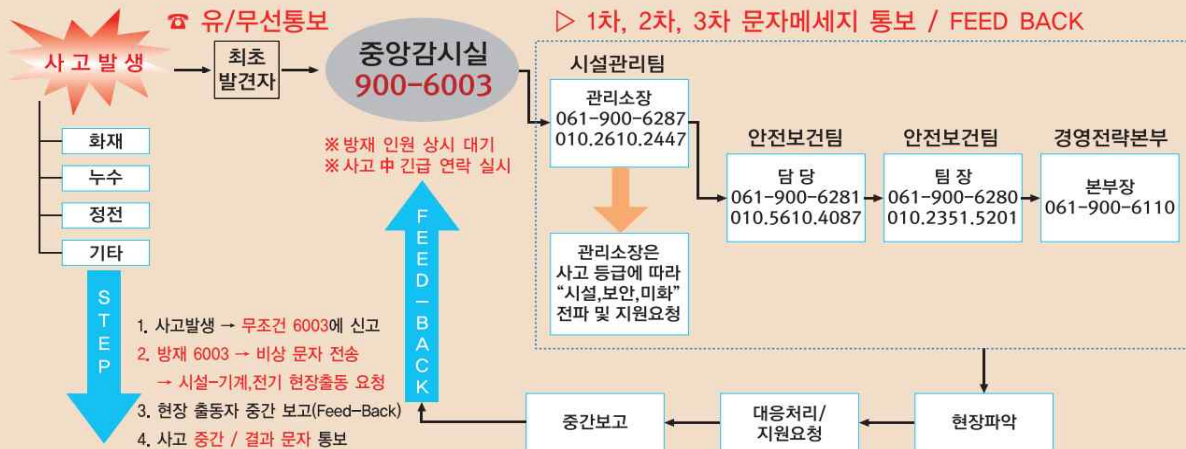


□ 비상상황·재난재해 보고·전파 체계도

[나주본원 <비상상황·재난재해 보고·전파> 체계도]

상황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화재	→	빛가람안전센터 061-330-0936	정전	→	한전 나주지사 061-330-2268
가스	→	가스안전공사 1544-4500	승강기	→	광성엘리베이터 1544-6936
환자	→	빛가람종합병원 061-820-0820	풍수해	→	광주지방기상청 062-720-0200
범죄	→	빛가람치안센터 061-331-0112	상수도	→	나주시상하수도과 061-339-7681

긴급연락
112
119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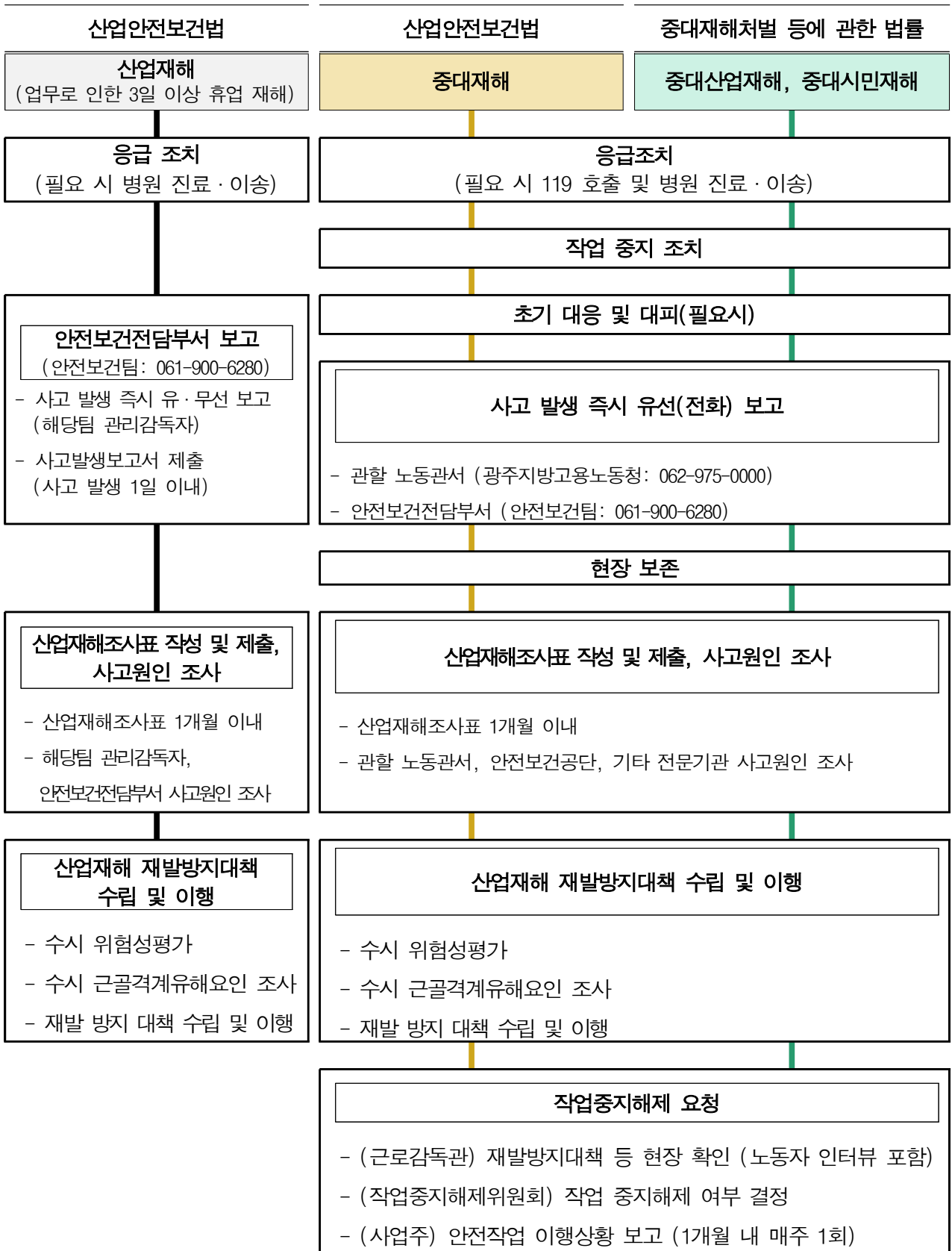


□ 비상연락망[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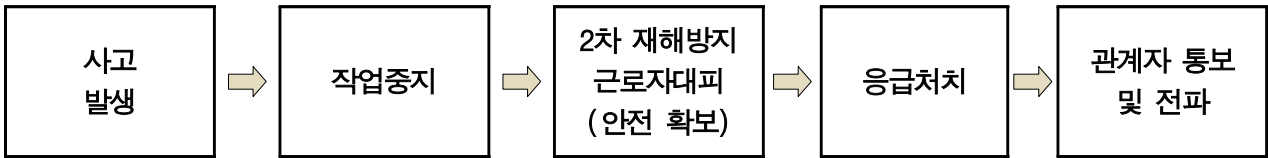
○ 개인정보 보안에 따른 미게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비고
고용노동부				산재 신고
에스원				보안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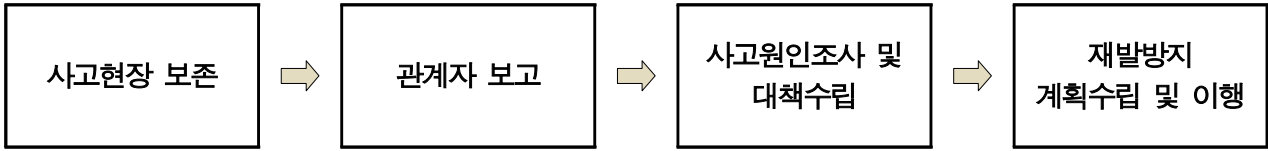


2 사고 발생 대응



구분	내용	수행자
작업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 비상벨, 통신장비를 이용하거나 큰 소리로 주변 노동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한다. • 사고발생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전: 즉시 전원을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작업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입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무너짐: 해당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발상 방지(누유 등) - 유해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최초발견자
2차 재해방지 근로자 대피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위험물로부터 대피시킨다. • 사고현장으로부터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자 대피 등 위험원을 보호 조치하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현장담당자
응급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가 심장박동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AED)로 응급상황 조치를 한다. • 재해자가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장비를 이용하여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 재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큰 부상일 경우는 무리하게 옮기지 않고 119등의 지시에 따른다. • 사고가 경미한 재해인 경우 구급약품을 이용하거나 병원 진료를 한다. * (별첨) 사고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방법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현장담당자
관계자 통보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견자는 휴대폰, 무전기, 유선 이용해서 발생장소 및 재해자 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부서장), 안전보건 전담부서 장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 인명피해, 화재 등 경우 119 등에 즉시 신고한다. •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의 경비실, 방재실 등에 연락하여 즉시 도움을 구한다.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최초발견자

3 사고 발생 후속 조치



구분	내용	수행자
사고현장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장소에 작업중지를 명령한다.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CCTV 확보 - 사고 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절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 제한 	해당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관계자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조사를 보고한다.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 • 주관부처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당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의 근본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내용을 전사 공유하고 교육한다. 	해당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재발방지 계획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근본원인을 조사하고 관리상/작업환경/절차서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 근본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 재발방지 계획에 대한 이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해당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4 유형별 응급 조치 방법

재해 유형 ①	떨어짐, 넘어짐, 교통사고
---------	----------------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한다.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다친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환자가 있는 곳이 위험한 위치가 아닌 한 완전히 고정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 다친 부위의 위와 아래 관절을 모두 포함하여 부목(식판, 주걱 등 끈은 재료)을 활용하여 고정한다.
 - 목뼈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환자의 머리를 고정해주며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재해 유형 ②

끼임 · 베임 · 절단 사고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한다.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주요 증상
 - 손상 부위에 출혈량이 많고 속도가 빠르다.
 - 출혈량이 많아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얼굴이 창백하며 몸이 차가워지는 쇼크 현상 발생
 - 응급처치 요령
 -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지혈대 및 압박붕대로 출혈을 막아준다.
 - 출혈부분을 높여주고 안전되게 눕힌다.
 - 병원에서의 수술을 대비해서 절대로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쇼크방지를 위해 보온하여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절단 부위는 생리식염수로 씻어 깨끗한 거지로 감싼다.
 - 거즈로 감싼 후 다시 큰 타올로 싼 후 밀봉하여 얼음과 물 1:1의 비율로 섞은 용기에 봉지를 담아 냉장 상태를 유지한다.
 - 환자와 함께 접합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한다.

재해 유형 ③

충격쇼크(일사병, 열사병) 사고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한다.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주요 증상
 -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난다.
 - 메스꺼움을 느끼며 구토나 헛구역질을 한다.
 -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호흡이 불규칙하고, 심하면 의식이 없어진다.
 - 응급처치 요령
 - 머리에 부상이 없을 경우: 하체를 20~30cm 높인다.
 - 가슴부상으로 호흡이 힘들 경우: 머리와 어깨를 높인다.
 -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물, 차 등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경우, 수술을 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물을 주지 않고, 환자가 심하게 원할 때에는 거즈에 물을 적셔 입 언저리에 대어준다.

재해 유형 ④	이상온도 접촉(화상) 사고
---------	----------------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한다.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주요 증상
 - 1도 화상: 열에 의하여 피부가 붉어진 정도의 화상
 - 2도 화상: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의 화상
 - 3도 화상: 화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신경 및 조직의 파괴까지 동반된 화상
 - 응급처치 요령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근다.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 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상처에 부은 의복은 병원에서 떼도록 한다.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하여서는 안되며, 물집을 터트려서도 안된다.

재해 유형 ⑤	전기 감전 사고
---------	----------

-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환자를 처치한다.
 - 주요 증상
 - 전기쇼크에 의해 심장마비가 일어나 의식을 잃고 전신마비 증상을 나타낸다.
 - 전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곳에 상처가 생기며 특히 나오는 출구의 상처는 깊고 심하다.
 - 응급처치 요령
 -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환자를 처치한다.
 - 호흡정지 시 인공호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 119구급대 도착할 때까지 실시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다.

재해 유형 ⑥	가스 누출·중독 사고
---------	-------------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한다.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2차 재해(폭발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주요 증상
 - 위통, 구토, 경련
 - 현기증 및 의식 불명
 - 응급처치 요령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 의복을 이완시키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에는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빨리 고엽

IV. 관련 양식

1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근로자 수		
	④ 업종	소재지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 (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 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 체류자격: []		⑪ 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 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⑭ 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⑮ 상해 종류 (질병명)	⑯ 상해부위 (질병부위)		⑰ 휴업예상일 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 재해발생원인						

IV. ⑳ 재발 방지 계획						
----------------	--	--	--	--	--	--

※ ⑳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사업주
근로자대표(재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발생보고서							
사업장명							
사고발생부서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발생원인(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재해자	[주요내용(5W1H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재해자	부서명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재산피해	재산구분	피해물품명		주요피해내용		비고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사고사진	사진설명1			사진설명2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작성자			(서명)			

3 재해자 · 목격자 진술서

재해자 · 목격자 진술서	
소속	
직급	
성명	
진술내용(5W1H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기술)	
<p>·</p> <p>·</p>	
위 진술 내용과 틀림없음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4 사고(재해) 재발방지대책

사고(재해) 재발방지대책		
사 업 장 명		
재 해 일 시		
재해발생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i>* 5W1H 방식으로 서술</i></p>	
재해발생원인 (현상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i>* 재해발생 원인분석 (재해발생의 현상 또는 배경이 되었던 사실, 발생원인을 파악)</i></p>	
재발방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i>*재해방지대책 (주요원인에 대한 대책을 내용, 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립)</i></p>	
재 발 방 지 확 산 및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i>*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전파, 확산 계획 및 교육 실시 등</i></p>	
관 련 사 진		
	개선 전	개선 후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작성자	(서명)